

화성 동탄2택지개발지구 A58블록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A58BL

■ 공급대상 : 85㎡이하 835세대 및 85㎡초과 41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1,247세대

■ 사업주체 : (주)바우하우스

■ 시공사 : (주)라인산업

- ※ 본 아파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탄2택지개발지구 A58BL 동탄파라곤3차는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https://동탄파라곤3차.com>)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병행 오픈에 따른 상담전화(1866-1247)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5.06.20.(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주)바우하우스(이하 "사업주체" 또는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 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1항에 의거하여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바우하우스이며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0.(금)]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와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일반공급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임차인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후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항의 규정 [임차인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자격(무주택세대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를 적용합니다.

■ 본 주택의 견본주택 개관은 2025.06.20.(금) 10:00 부터이며, 공급안내문 등은 동탄파라곤3차 홈페이지(<https://동탄파라곤3차.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Home(한국부동산원)에서 가능하며, 견본주택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진행합니다.

■ 본 주택은 임대무기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여부,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대상자 등은 사업주체가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 전환하며,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임차인이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주택도시보증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에 본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계약금 및 중도금)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합니다.
- 본 주택은 타입 및 세대별 주택도시기금(82타입 : 140,000,000원)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도시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 부지에 근저당설정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 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임차인은 입주 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기금 설정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에 경우에는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미전출 시 입주가 불가함)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에 따라 “장래 임대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 법에 근거가 없어 우선변제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음” 안내하오니 이점 명확히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 중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벌이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위약금징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본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및 제14조의 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위 사유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주택의 명도 의무 발생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계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06.01.)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특례시 주택정책과-12592호(2025.06.19.)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58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20층 18개동 총 1,247세대 중 일반공급 997세대 [특별공급 250세대(신혼부부 187세대, 청년 63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신혼부부	청년		
0000	01	82.8446	82	82.8446	22.2302	105.0748	49.3799	154.4547	-	-	585	585
	02	82.8446	82-1	82.8446	22.2302	105.0748	49.3799	154.4547	187	-	-	187
	03	82.8446	82-2	82.8446	22.2302	105.0748	49.3799	154.4547	-	63	-	63
	04	108.7070	108	108.7070	28.6064	137.3134	64.7953	202.1087	-	-	411	411
	05	139.4606	139	139.4606	40.5236	179.9842	83.1261	263.1103	-	-	1	1
	합 계								187	63	997	1,247

■ 본 주택은 청약 신청 시, 일반공급(82), 신혼부부 특별공급(82-1), 청년 특별공급(82-2)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균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조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가등기 대상이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 법적사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공고상 전용면적(㎡)	82.8446			108.7070	139.4606
공급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타입표기 방식	82-1	82-2	82	108	139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 기타 안내 등은 약식 등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이 동일한 타입이라도 일반공급(82), 신혼부부 특별공급(82-1), 청년 특별공급(82-2)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본 주택의 임대무기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무기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임차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세대,원)

구분	타입	동별	층별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중도금(49%)					잔금(41%)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9%)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5.09.25.	2025.12.25.	2026.03.25.	2026.06.25.	2026.09.25.	
특별 공급	82-1 82-2	4031동 4호, 4032,35,38,39동 2,3호 4034동 2호, 4036,43,45,48동 1,2,3호 4037,41,44,47동 2,3,4호, 4040동 1,2호, 4042,46동, 1호	1층	38	298,200,000	14,910,000	14,910,000	29,820,000	29,820,000	29,820,000	29,820,000	26,838,000	122,262,000
		4031,37,41,44,47동 2,3,4호 4032,33,35,38,39동 2,3호 4034,46동 2호, 4036,42,43,45,48동 1,2,3호 4040동 1,2호	2층	44	304,850,000	15,242,500	15,242,500	30,485,000	30,485,000	30,485,000	30,485,000	27,436,500	124,988,500
			3층	44	311,500,000	15,575,000	15,575,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28,035,000	127,715,000
			4층	44	318,150,000	15,907,500	15,907,500	31,815,000	31,815,000	31,815,000	31,815,000	28,633,500	130,441,500
			5층	44	320,950,000	16,047,500	16,047,500	32,095,000	32,095,000	32,095,000	32,095,000	28,885,500	131,589,500
		4031,37,41,44동 2,3,4호 4032,33,35,38,39동 2,3호 4034,46동 2호, 4036,42,43,45동 1,2,3호	6층	36	324,450,000	16,222,500	16,222,500	32,445,000	32,445,000	32,445,000	32,445,000	29,200,500	133,024,500
일반 공급	82	특별공급 세대 외	6층이상	585	440,325,000	22,016,250	22,016,250	44,032,500	44,032,500	44,032,500	44,032,500	39,629,250	180,533,250
	108	4031,34,37,41,44,46,47동 1호 4032,33,35,38,39동 1,4호 4036,42,43,45,48동 4호	1층	22	513,950,000	25,697,500	25,697,500	51,395,000	51,395,000	51,395,000	51,395,000	46,255,500	210,719,500
			2층	22	525,825,000	26,291,250	26,291,250	52,582,500	52,582,500	52,582,500	52,582,500	47,324,250	215,588,250
			3층	22	537,700,000	26,885,000	26,885,000	53,770,000	53,770,000	53,770,000	53,770,000	48,393,000	220,457,000
			4층	22	549,100,000	27,455,000	27,455,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54,910,000	49,419,000	225,131,000
			5층	22	554,800,000	27,740,000	27,740,000	55,480,000	55,480,000	55,480,000	55,480,000	49,932,000	227,468,000
			6층이상	301	560,025,000	28,001,250	28,001,250	56,002,500	56,002,500	56,002,500	56,002,500	50,402,250	229,610,250
	139	4039동	19층	1	718,675,000	35,933,750	35,933,750	71,867,500	71,867,500	71,867,500	71,867,500	64,680,750	294,656,750

■ 상기 임대조건의 최초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가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타입별, 층별 차등이 있으므로 청약 전 임대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 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공통)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5.06.20.(금) 현재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 및 법인은 청약불가) 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반드시 해당 타입(82-1, 82-2)으로 청약 신청하셔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공급,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공급유형		공급세대수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 공급	신혼 부부	187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0.(금)] 현재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다) 자산 :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특별공급(신혼부부, 청년)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청년	63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0.(금)] 현재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라) 자산 :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특별공급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3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4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5.06.20.(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점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598,164원	5,477,003원	7,626,973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110% 이하	3,957,980원	6,024,703원	8,389,670원	9,435,897원	9,934,153원	10,706,395원	11,478,636원	12,250,878원
120% 이하	4,317,797원	6,572,404원	9,152,368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임차인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당사 홈페이지 ((<https://동탄파라곤3차.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공급유형	공급세대수	자격요건	선정방법
일반공급	997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0.(금)] 현재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단,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2의2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이 주택은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며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2025.06.20.(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충족 시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임차인 300%)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임차인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당사 홈페이지 ((<https://동탄파라곤3차.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청약신청금(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 주택형	1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써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주택청약 참가은행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 주택형 청약자 전원(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환불대상	• 인터넷 청약자 전원(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환불시기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방법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무주택 판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요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중전의「건축물」(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을 산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9.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25.06.30.(월) 09:00 ~ 17:30	■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10만원	25.07.03.(목)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이며, 신청마감시간 17:30가 경과되면 청약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당사 홈페이지(<https://동탄파라곤3차.com>)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간 09:00 ~ 17:30)

구분	내용
이용안내	• 주택청약 참가은행(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서비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가입을 하신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여야 함)
이용방법	• [PC 청약시]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는 PC 청약방법 참조

■ 인터넷 청약이 불가(노약자, 장애인 등)할 경우, 견본주택 방문 청약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자 중 인터넷 청약이 불가(노약자, 장애인 등)할 경우, 견본주택 방문 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일정 및 장소, 구비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일자	신청장소	비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불가자 견본주택 방문 청약	25.06.30.(월) 10:00 ~ 17:30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27-6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

■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건본주택 비치) / 본인, 배우자 서명가능 - 특별공급, 일반공급 건본주택 방문 청약 시 청약신청금 필요(주택청약 참가은행에 통장개설 및 청약신청금 예치),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건본주택 방문 ※ 건본주택에서는 현금수납이 불가하므로 필히 주택청약 참가은행 입출금 통장에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 예치돼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필히 발급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할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6.20.) 이후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 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시 건본주택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청약홈 신청사항 혹은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5.07.03.(목) 16: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예비당첨자	25.07.04.(금) 10:00 이후	■ 예비당첨자 명단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후 당사 홈페이지(https://동탄파라곤3차.com)에 별도 공고 예정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서류접수 및 계약일정	계약체결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5.07.04.(금) ~ 2025.07.08.(화) 10:00 ~ 17:00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27-6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5.07.09.(목) ~ 2025.07.14.(월) 10:00 ~ 17:0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며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 제출시 대리 신청 불가
			○		3.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4.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5.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7.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유형 별	공통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건본주택 비치
				○	3.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간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건본주택 비치)
	청년		○		1.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 소득이 있을 경우
			○		3.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 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		1. 결혼 확인 서류	본인	■ 서약서(건본주택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예비배우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 “상세” 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예비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2. 위임장	-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제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5.06.20.(금)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속적인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 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신규 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 계속 근로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원,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사업소득 미신고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 청약 불가(전년도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불가) -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본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법인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원본) - 근로자인 경우 : 위 해당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계속적인 프리랜서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자용) ※ 전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규 프리랜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또는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위 서류 제출시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필수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 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2)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세무소 - 해당직장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지자체(읍면동)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에 한함)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또는 확인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명시) - 근로자 해당 소득 서류	- 관할구역 고용센터 - 해당직장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간(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임대보증금	우리은행	1005-103-333177	(주)바우하우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101홍길동)

■ 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 발행 후 상기 계좌와 연동된 동호수별 가상계좌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선택안	설치개소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비 고
82	1안	3	거실+주방+침실1	5,100,000	LG 시스템에어컨
	2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000,000	
108	1안	3	거실+주방+침실1	5,200,000	
	2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9,700,000	
139	1안	3	거실+주방+침실1	5,700,000	
	2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9,700,000	

■ 현관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신발장(유리도어)+현관천장(리니어조명)	2,2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 마감 ※ 미선택시 PET 신발장 1개소
108	신발장(유리도어+하부 석재)+현관천장[우물천장(클래식몰딩)+리니어조명(현관,복도)+복도매입등]	4,300,000	
139	신발장(유리도어+하부 석재)+현관천장[우물천장(클래식몰딩)+리니어조명(현관,복도)+복도매입등]	9,000,000	

■ 현관 중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현관 중문(여닫이)	2,800,000	※ 미선택시 중문 및 중문 프레임 미설치
108	현관 중문(슬라이딩도어)	1,900,000	
139	현관 중문(슬라이딩도어)	3,400,000	

■ 벽판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	-------	------	-----

82	복도, 소파뒤 벽판넬(민자)	1,6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 마감
108	복도, 소파뒤(몰딩)	3,000,000	
139	복도, 소파뒤(몰딩)	6,300,000	

■ 현관팬트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108	현관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등기구)	3,6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 마감
139	현관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등기구)	7,500,000	

■ 거실 천장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우물천장+조명특화(거실 리니어조명, 거실 마크네틱 조명)	3,900,000	※ 미선택시 우물천장 미설치 ※ 미선택시 기본 민자 천장마감
108	우물천장(클래식몰딩)+조명특화(거실 리니어조명, 거실 매입등)	4,200,000	
139	우물천장(클래식몰딩)+조명특화(거실 리니어조명, 거실 매입등)	5,200,000	

■ 주방 천장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우물천장(리니어조명)+조명특화(식탁등)	2,500,000	※ 미선택시 우물천장 미설치 ※ 미선택시 기본 민자 천장마감
108	우물천장(클래식몰딩+리니어조명)+라인매입등+조명특화(식탁등+아일랜드등)	3,600,000	
139	우물천장(클래식몰딩+리니어조명)+라인매입등+조명특화(식탁등+아일랜드등)	9,400,000	

■ 커튼박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	-------	------	-----

82	커튼박스(거실, 전체 침실) 리니어조명	4,000,000	※ 미선택시 리니어조명 미제공
108	커튼박스(거실, 전체 침실) 리니어조명	4,500,000	
139	커튼박스(거실, 전체 침실) 리니어조명	8,600,000	

■ 거실 아트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아트월 세라믹 타일	6,1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 마감
108	아트월 세라믹 타일	7,000,000	
139	거실 아트월, 소파 뒷 벽, 창호면 세라믹 타일	11,500,000	

■ 마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139	원목마루	12,100,000	※ 미선택시 기본 강마루 마감

■ 주방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세라믹타일 상판+세라믹타일 벽+사각싱크볼+고급수전+상부플랩장(상,하부조명포함)	9,800,000	※ 미선택시 MMA 상판, 벽 타일(약300mmX약600mm) 마감 ※ 미선택시 일반 싱크볼, 일반 수전, 기본 상부장 설치
108	세라믹타일 상판+세라믹타일 벽+사각싱크볼+고급수전+상부플랩장(상,하부조명포함)	10,700,000	
139	세라믹타일 상판+세라믹타일 벽+사각싱크볼+고급수전+상부플랩장(상,하부조명포함)	21,800,000	

■ 주방 가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장식장+주방벽 판넬마감	7,3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주방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등기구)	4,0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108	주방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등기구)	4,5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본주방팬트리A(도어+시스템선반+등기구)+홈바(폭 약600mm)	12,7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독립형 냉장고장 (냉장고,김치냉장고 자리)	4,3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아일랜드형 식탁+무선충전기+1구 하이라이트쿡탑+세라믹타일 상판	10,900,000	※ 미선택시 미제공
139	장식장	12,1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주방팬트리(도어+시스템선반+등기구)	8,0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독립형 냉장고장 (냉장고+김치냉장고 자리)	8,2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아일랜드형 식탁+무선충전기+1구 하이라이트쿡탑+세라믹타일 상판	22,800,000	※ 미선택시 미제공

■ 가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전타입	3구 인덕션 (LG)	1,200,000	※ 미선택시 3구가스쿡탑 설치
	전기오븐(LG)	500,000	※ 미선택시 가구 수납장 설치
139	냉장고(LG)	4,500,000	※ 미선택시 미제공
	김치냉장고(LG)	2,600,000	※ 미선택시 미제공
	식기세척기(LG)	2,300,000	※ 미선택시 가구 수납장 설치
	와인셀러	1,500,000	※ 미선택시 가구 수납장 설치

■ 보조 주방장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하부 보조주방장(수전포함)+소형싱크볼+MMA상판	1,700,000	※ 미선택시 미제공
108	상/하부 보조주방장(수전포함)+1구 하이라이트쿡탑+소형싱크볼+MMA상판	3,100,000	※ 미선택시 미제공
139	상/하부 보조주방장(수전포함)+1구 하이라이트쿡탑+소형싱크볼+MMA상판	6,500,000	※ 미선택시 미제공

■ 침실1(안방)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시스템선반+벽판넬)+화장대장+슬라이딩도어+린넨장+등기구+천장형 제습기	16,4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 선택시 욕실 2도어 이동있음
108	(시스템선반+벽판넬)+화장대장+슬라이딩도어+린넨장+등기구+천장형 제습기	18,5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 선택시 욕실 2도어 이동있음
139	(시스템선반+벽판넬) + 화장대장+ 슬라이딩도어+린넨장+등기구+천장형 제습기	32,4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 선택시 욕실 2도어 이동있음

■ 침실 가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분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침실2	불박이장	4,200,000	※ 미선택시 기본 벽지마감
108	침실2	불박이장	4,200,000	
	침실2,3	통합형 침실 불박이장(가변형 벽체 미시공시)	4,900,000	
139	침실2	불박이장	6,000,000	
	침실3	불박이장	6,000,000	
	침실2,3	통합형 침실 불박이장(가변형 벽체 미시공시)	10,100,000	
	침실1,2,3	벽판넬	6,100,000	

■ 욕실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분	적용 사항	공급금액	비 고
82	부부욕실	언더세면기+하부장+상판(엔지니어드스톤)+수전+비데일체형양변기 +샤워수전+샤워부스(컬러)+액세서리	4,300,000	※ 미선택시 기본 세면기, 기본 양변기, 기본 수전, 기본 샤워부스, 기본 액세서리 설치
	공용욕실	비데일체형양변기+언더세면기+하부장+상판(엔지니어드스톤)+수전+액세서리	3,000,000	※ 미선택시 기본 세면기, 기본 양변기, 기본 수전, 기본 액세서리 설치
	가전	복합 환풍기 (공용욕실, 부부욕실)	2,200,000	※ 미선택시 기본 환풍기
108	부부욕실	언더세면기+하부장+상판(엔지니어드스톤)+수전+비데일체형양변기 +샤워수전+샤워부스(컬러)+액세서리	4,300,000	※ 미선택시 기본 세면기, 기본 양변기, 기본 수전, 기본 샤워부스, 기본 액세서리 설치

139	공용욕실	비데일체형양변기+언더세면기 +하부장+상판(엔지니어드스톤)+수전+액세서리	3,300,000	※ 미선택시 기본 세면기, 기본 양변기, 기본 수전, 기본 액세서리 설치
	가전	복합 환풍기 (공용욕실, 부부욕실)	2,200,000	※ 미선택시 기본 환풍기
	부부욕실	언더세면기+하부장+상판(엔지니어드스톤)+수전+터치형 조명거울+비데일체형양변기 +샤워수전+샤워부스(컬러)+액세서리+욕조턱	8,700,000	※ 미선택시 기본 세면기, 기본 양변기, 기본 수전, 기본 샤워부스, 기본 액세서리 설치
	공용욕실	비데일체형양변기+언더세면기+하부장+상판(엔지니어드스톤) +수전+하부조명욕실장+액세서리	6,900,000	※ 미선택시 기본 세면기, 기본 양변기, 기본 수전, 기본 액세서리 설치
	부부,공용욕실	욕실 타일(600mm*600mm)	6,100,000	※ 미선택시 기본 바닥타일 (300mm*300mm)
	가전	복합 환풍기 (공용욕실, 부부욕실)	3,200,000	※ 미선택시 기본 환풍기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위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관련 홍보물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방향 및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견본주택 등에서 별도로 계약 체결한 추가선택 품목(안전 방법 방충망 등) 선택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 및 마감재 시공 분에 대한 금액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별도 마감재 미시공으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 추후 미설치에 따른 금액 환불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다.
- 추가선택품목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갑"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세대 내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2·3·4(침실4는 108형, 139형만 해당)에 설치·시공됩니다. 단, 거실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실외기 1대로는 최대 3in1(스탠드형 1대+벽걸이형 2대)까지 설치 가능하며, 그 이상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요구에 따른 에어컨 위치 변경 또는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해당 실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주방발코니(실외기실 내)에 에어컨 배관이 노출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 및 천장 단열재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제품이며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시, 실외기실에 실외기 배치가 불가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타입별 옵션 선택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임대보증금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시기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및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선택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자(건설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흡바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디자인된 주방 흡바가 설치되며 입주자가 임의로 위치 및 디자인 지정을 할 수 없으며 상세한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팬트리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팬트리 선반 및 도어가 설치되며 입주자가 임의로 위치 및 디자인 지정을 할 수 없으며 상세한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흡바 및 팬트리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등기구 및 스위치 위치 또는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시 해당 위치는 벽지 마감 시공됩니다.
- 주방 특화(마감)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포인트타일(주방벽), 세라믹타일(싱크대 상판, 주방 벽)을 입주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면적 및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다르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마감)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주방 싱크볼과 수전이 사각 싱크볼 및 고급수전으로 변경 설치되며 상세한 디자인 및 변경사양 등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의제기 및 변경요청을 사업주체에게 할 수 없습니다.
- 주방 특화(마감)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MMA 상판 및 타일벽체, 기본형 싱크볼, 기본형 수전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 마감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므로 추후 입주자는 미설치에 따른 금액 환불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아트월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입주자가 임의로 위치 및 디자인 지정을 할 수 없으며 상세한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아트월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타일은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 아트월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므로 추후 입주자는 미설치에 따른 금액 환불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다.
- 침실1 드레스룸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 벽판넬, 시스템선반, 화장대장가 설치되며 상세한 디자인 및 변경사양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의제기 및 변경요청을 사업주체에게 할 수 없다.
- 침실1 드레스룸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평형, 타입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사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벽지, 등기구 및 스위치 위치 또는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2 불박이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설치 부위(벽면, 하부, 천장 등)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2 불박이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평형, 타입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사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등기구 및 스위치 위치 또는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2,3 통합형 불박이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설치부위(벽면, 하부, 천장 등)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2,3 통합형 불박이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등기구 및 스위치 위치 또는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보조주방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상/하부 보조주방장(수전포함), 소형 싱크볼, MMA상판, 1구 전기쿡탑(82형 제외)이 설치되며 상세한 디자인 및 변경사양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의제기 및 변경요청을 사업주체에게 할 수 없다.
- 발코니 보조주방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설치부위(벽면, 하부 등)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전(인덕션, 전기오븐)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해당 제품 A/S를 제공되는 모델의 제작자가 설치, 진행하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주방 하부장 상판에 가스배관(노즐) 설치를 위한 타공은 캡마감 됩니다.
- 전기오븐 설치 구간은 바닥, 배면 구간에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9% 범위(중도금 1회부터 중도금 5회까지)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알선을 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차인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 납부 일까지의 사업주체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임차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임대보증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임대보증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임차인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임차인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 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등급이 다소 변경(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해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인 당사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대주택 매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허가)

■ 발코니 확장

- 본 임대주택은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동일하게 전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공급신청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시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차인 모집 안내문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자는 입주 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자금 설정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 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자는 세대원 전출 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전환 이후 가능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입주 시 잔금 등의 완납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와 공동주택 옥탑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임차인 공급신고 이전 운영된 홍보관 및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공급신고 이후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개발계획 및 단지외부여건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임.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및 기타시설(주유소 등)이 존치 예정임. • 당해 지구 내에는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 본 단지 북서측 약 0.9km 지점(직선거리) 초등학교 부지 및 고등학교 부지가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 북서측 약 0.6km 지점(직선거리) 유치원 부지가 위치하고 있음. • 본 단지 북서측 약 0.6km 지점(직선거리) 근린상업용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남측으로 한전 송전철(C/H) [남사~진위 송전선로]이 인접해 있음.

	• 단지 서측 및 4031동, 4037동 인근으로 화성동탄물류단지 및 냉동창고(직선거리 약 0.8km)가 위치하여, 시설물의 이용 차량 및 냉각탑 등에서 따른 소음, 교통혼잡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의 동탄JC 남동측에 폐기물처리시설(크린에너지센터_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선거리 약 3.8km)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북서측 약 5.1km 직선거리에 동탄역(SRT, GTX-A(예정))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화성시의 공용버스노선 및 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업지 주변 공용버스 운행이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반시설의 미완료로 인한 당 사업지의 정식 사용승인이 아닌 동별 준공, 또는 임시사용 등이 불가피할 경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단지 내 조경, 단지 내 우·오수처리계획,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본 단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주변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공원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북측 동탄신리천로, 단지 서측 화성동탄물류단지로 소음, 진동,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북측 : 폭 20~21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인접한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해야 함. • 주출입구,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가 인접해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외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및 계단 등의 설치될 수 있음. 위치, 높이, 벽체두께, 형상,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 내 천장고는 거실/침실기준 2,300mm로 설계되었으며 우물천장 설치 및 확장/옴션 평면선택 등의 사유로 본 공사 시 천장고 및 실별 바닥 단차는 변경될 수 있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의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발코니확장)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임차인은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다용도실 및 대피공간을 제외한 전체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하여 요청할 수 없음. 이점 충분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해야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 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드레스룸 옵션선택시 도배 및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불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세대내 문 및 창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화장실 등 타일이 시공되는 부위의 타일 줄눈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에는 소방배관, 가스배관, 에어컨배관(옵션 선택 시), 환기 배관 및 덕트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종관 등) 및 바닥 드레인온 천정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1단으로써 시스템 에어컨(옵션) 또는 개별 에어컨(미옵션) 중 하나의 실외기만 설치가 가능하며, 2단으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별도의 위치에 설치해야 함.
-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 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함. 또한,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및 필로티 상부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 하부층이 필로티일 경우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함.
- 동체감지기 설치 1~2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됨.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필로티 상부 1개 층, 기타층은 거실1개소만 설치됨)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주방 하부장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화장실 및 주방 배기 슬리브 위치 및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에어컨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주방발코니의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1층 필로티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 방법 특별 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통신 단자함 설치 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므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학교관련	•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함. • 본 주택의 입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가칭)동탄23초(26.9. 개교예정)에,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에, 고등학생은 화성시가 고등학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 예정이며, 추후 관할교육청의 학교배치관련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사업지에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관련 정책 및 교육환경의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학교 상황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사업지 인근 및 동탄2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는 경기도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의 설립은 동탄2택지개발지구 개발(실시) 계획의 변경, 경기도 화성 동탄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본 아파트 주변 학교시설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사업지는 2027년 2월말 입주 예정으로 인근 학교로의 전학이 필요한 세대의 경우, 원활한 학사 배정을 위하여 사전에 수요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람.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응답한 경우 희망하는 학교로의 전학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해당 수요조사는 학교 배정을 위한 행정적 참고자료일 뿐 희망 학교로의 전학이 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며, 학교 배정 및 전학 관련 사항은 관할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음.)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82, 108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통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 에어컨, 콘센트, 리모컨, 월패드, 조명기구, 조명기구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난간포함),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견본주택용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차인 공급신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대지지분의 증감은 제외)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 공용조명(경관조명 등), 조형물, 항공장애등,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부 놀이터 및 운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차량에 의한 각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접 동, 인접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부색채, 마감재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 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웬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차량 진출입구 및 주차램프 등은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의견 및 제반법규 등을 반영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 : 단지 북측, 인근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됨.(지하1층 진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차장은 진출입로를 공유함) - 부출입구 : 단지 북서측, 인근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설치됨.(지하1층 진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차장은 진출입로를 공유함) -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측, 북서측 각 1개소가 설치되어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를 겸용하여 이용함. 근린생활시설-1 주차장은 단지 북서측 부출입구를 진입하여 4032동, 4033동 후면 지하1층에 주차구획 20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2 주차장은 단지 북측 주출입구를 진입하여 4040동 후면 지하1층에 주차구획 28대 설치됨. • 4039동과 4046동 사이 단지내 지상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됨.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와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내부 및 단지경계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포함)의 경사도는 시공시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 4031~4048동으로 부여되었으며, 공급시의 명칭과 향후 입주시의 명칭이 상이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지하를 연결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및 옥외계단(엘리베이터 총 2대, 옥외계단 2개소)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내 레벨차를 연결하는 옥외경사로 2개소가 계획 될 예정이며, 단지 내 옥외경사로의 도로포장, 옹벽디자인, 형태, 재질, 벽체두께, 위치, 도로폭 등은 실시공을 진행하며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옥외계단과 인접한 세대에는 시각적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변경 등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 바름. •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와 인접한 구간(남서~남동측, 4031동, 4037~4039동, 4045~4048동 인접)에는 토목옹벽이 1~3단 설치될 예정이며, 옹벽의 최고높이는 약 6.0M로 계획되어있음. 단지 내 옹벽의 종류, 높이, 디자인, 형태, 재질, 위치 등은 실시공을 진행하며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접근 가능한 도로 또는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비상자동차 동선 및 주차구획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지하에 발전기실 및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저류조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휀룸 및 동전기실이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매연(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상부 및 인접세대는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면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채광 창 의 위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비상용/피난용 포함), 계단실 및 샤프트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동 최상층엔 엘리베이터(비상용/피난용 포함) 기계실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동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되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규모 등 모델하우스 설치 단지 모형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인접 세대는 태양광 패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옥상,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 태양광 등 등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상위 지침변경,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소음을 재측정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소음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방음터널 등)를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현관 및 필로티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당사 특화계획과 디자인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동 옥상 및 구조물의 형태, 색채, 입면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1개층 P1,P2 두 개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4043동, 4044동을 제외한 동은 동출입구에서 1개 구역으로만 직접 진입이 가능함.
- 4031~4046동 주차장 이용시 지하1층에 동출입구가 연결되어 있으며, 4047~4048동은 주차장 이용시 지하2층에 동출입구가 연결되어 사용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다른 층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외부 계단 등 이용하여 동선이 길어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하P1~P2층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부출입구, 주출입구 인근 지하1층에 위치함.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4031동, 4032동 사이, 4033동 동측 각 1개소씩 총 2개소 위치하며,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P1~P2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진입부분 및 통로의 유효높이는 2.7m이며, 주차구획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설계되었으나 시공 시 각종 배관설치 등으로 일부구간 유효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 위치에 따라 접근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층 E/V홀 및 계단실은 여름철에 대기환경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 : 관리사무소, MDF실, 경비실, 방재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실, 실내 탁구장),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독서실, 용역원 휴게실, 맘스스테이션, 공동작업장, 기타 휴게공간 등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웬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지반층에 설치되며, 4039동 동측 및 4046동 서측 옥외계단에 통한 선근 진입으로 출입이 가능함.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됨. 또한 실 시공 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실외기실 및 실외기 설치공간이 구획될 예정이며 통행 시 미관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북측 주출입구, 부출입구 인근 각 1개동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등(MDF,방재실, 근생 제외)) 냉방은 EHP, 난방은 FCU로써 실내기가 구분되어 공급될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 및 실외기 설치공간이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주동 소방관련 급기용 D/A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인근 재활용(쓰레기)보관소가 설치되며 냄새, 소음 및 시각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시설물의 경우,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지하1층 주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동선이 상이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량은 추후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1층 필로티 및 주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배치 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함.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음.)

유효 지반가속도(S)	지반 종류	중요도 계수(I _e)	내진설계범주	내진등급	반응수정계수(R)
0.176	S2~S4	1.2	C	I	4.0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 VII-0.200g 임.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이 단지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음.
- 한전 PAD,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통신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 분배기 및 세대 통합 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 등은 기간 사업자 제공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4046동 지붕에 TV 공정 안테나(전파 방향 기준)와 지상 일부 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안테나(4031동, 4033동, 4036동, 4042동, 4043동, 4046동, 4047동 옥상층) 및 중계설비(지하P1층 4043동 웬룸, 4036동 웬룸, 4041동 웬룸, 4045동 PIT)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파 상태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소방법 및 방송 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할 수 있음.
- 단지 내 특고압 전력 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 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될 예정임.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 총 3단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을 연결해주는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옥외계단 등 계획되어 있음. •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와 인접한 구간(남서~남동측, 4031동, 4037~4039동, 4045~4048동 인접)에는 토목옹벽이 1~3단 설치될 예정이며, 옹벽의 최고높이는 약 6.0M로 계획되어있음. 단지 내 옹벽의 종류, 높이, 디자인, 형태, 재질, 위치 등은 실시공을 진행하며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내 옹벽, 옥외계단 등 설치에 따른 영구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할 사항으로 향후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레벨차에 따라 조경석, 옹벽, 산석, 옹벽(보강토 옹벽, 패널옹벽 등) 및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담장 등으로 시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저층세대 시야 간섭 및 소음등에 영향이 발생됨. • 단위세대 내/외부 창호 위치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 중앙광장 인근 설치 (4034동 북측, 4035동 동측) - 경로당 : 중앙광장 인근 설치 (4045~4046동 북측)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 중앙광장 인근 설치 (4039동 북동측, 4046동 남서측) - 중앙광장 : 단지 내 중앙 설치 / 어린이놀이터-1 : 4032동 남측 / 어린이놀이터-2 : 4042동 남측 - 주민운동시설-1 : 4039동 남동측 / 주민운동시설-2 : 4031동 남측 - 근린생활시설 : 북측 도로면 지하1층에 설치 • 4031동, 4032동, 4033동 북측에 설치된 단지 출입구 문주 및 경비실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외벽이 노출되는 구간, 주동 PIT층에 일부 벽체가 OPEN 되거나 그릴창 설치되어 외기(빛물, 바람, 눈 등)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단차 구간에는 투시형 난간 및 생울타리 담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MDF실, 경비실, 방재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실, 실내 탁구장),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독서실, 용역원 휴게실, 맘스스테이션, 공동작업장, 기타 휴게공간 등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의 시설들은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운동기구, 집기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사업주체와 무관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임대주택이므로, 임대무기간 경과 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분양가격 및 방법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하여 시행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본 임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5-704-0070000 호	일금 사천일백일십칠억구천삼백사십오만 원정 ₩ 411,793,450,000	보증서 발급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부로 함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임대차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회 사 명	(주)동우이앤씨	(주)신원기술단	(주)건창기술단
감리금액	2,960,100,000	855,866,000	392,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 호	주 소	등록번호
사업주체	(주)바우하우스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서동)	200111-0468897
시공회사	(주)라인산업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서동)	205711-0007169

▣ 견본주택 홈페이지 주소 : <https://동탄파라곤3차.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27-6 / 분양문의 ☎ 1866-1247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